

『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02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02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02월 25일

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우리시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명품도시에 맞는 선진장사문화 정착 및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공사의 부지를 매입하여 화장시설을 조기 건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[안전] 구미시 시립화장장 부지 매입

○ 토 지 (취득)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 77-1번지
- 면 적 : 70,800m²
- 기준가격 : 354,000천원(가감정가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대회

○ 본 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구미시 시립화장장 부지를 취득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옥성면 농소리 산77-1번지(면적 70,800m²)를 354,000천원(가 감정가)으로 매입하는 건으로 지난 2012. 6월 입지 공개모집 후 2012년 10월 29일 최종 선정부지가 결정되어 시립 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하게 됨.

○ 검토결과

- 본 안건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의회 의결”사항임.
본 건의 대상 부지는 2012년 6월 화장장 입지 공개 모집,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10월 29일 구미시 시립화장장

추진위원회에서 “옥성면 농소2리로 최종 선정”되었으며, 화장의 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설화장장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 및 선진 장사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